강원 고성 간성스위트엠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

SWEET M 간성스위트엠 센트럴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의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6.28.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영진하우징(주)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2018년 12월 21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성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6.28.)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고성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anseong-sweetm.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07월 03일(수)	07월 04일(목)	07월 05일(금)	07월 11일(목)	07월 23일(화) ~ 07월 25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고성군 종합민원실-22481호(2019.6.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산3번지 외 4필지
■ **대지면적** : 11,14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0층, 3개동, 총 267세대(특별공급 총 1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111세대(기관추천 26세대/다자녀 24세대/신혼부부 53세대/노부모부양 8세대) 〉
■ **입주시기** : 2021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소계		
민영 주택	2019000571	01	066.9415	66	66.9415	22.1405	89.0820	23.1169	112.1990	37.6915	88	8	8	17	3	36	52	3
		02	069.4850	69	69.4850	23.7645	93.2495	23.9953	117.2448	39.1236	28	3	2	6	1	12	16	2
		03	075.3428	75	75.3428	24.8104	100.1532	26.0182	126.1714	42.4219	113	11	11	22	3	47	66	3
		04	084.2949	84	84.2949	26.8983	111.1932	29.1097	140.3029	47.4624	38	4	3	8	1	16	22	-
		합 계									267	26	24	53	8	111	156	8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구 분		층수	세대 수	분양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소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계약일+7일	2019.08	2019.12	2020.04	2020.08	2020.12	2021.04	입주시
공동 주택	66	1층	3	9,947,195	180,052,805	190,000,000	10,000,000	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57,000,000
		2층	5	10,208,964	184,791,036	195,000,000	10,000,000	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58,500,000
		3층	5	10,366,025	187,633,975	198,000,000	10,000,000	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59,400,000
		4,5층	10	10,784,854	195,215,146	206,000,000	10,000,000	1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20,600,000	61,800,000
		6~10층	25	10,941,915	198,058,085	209,000,000	10,000,000	10,900,000	20,900,000	20,900,000	20,900,000	20,900,000	20,900,000	20,900,000	62,700,000
		11~15층	20	11,098,976	200,901,024	212,000,000	10,000,000	1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63,600,000
		16~20층	20	11,256,037	203,743,963	215,000,000	10,000,000	1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64,500,000
	69	1층	2	10,366,025	187,633,975	198,000,000	10,000,000	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59,400,000
		2층	2	10,575,439	191,424,561	202,000,000	10,000,000	1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60,600,000
		3층	2	10,732,500	194,267,500	205,000,000	10,000,000	1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61,500,000
		4,5층	4	11,151,330	201,848,670	213,000,000	10,000,000	1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63,900,000
		6~10층	10	11,308,391	204,691,609	216,000,000	10,000,000	1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64,800,000
		11~15층	5	11,465,452	207,534,548	219,000,000	10,000,000	1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65,700,000
		16~18층	3	11,622,513	210,377,487	222,000,000	10,000,000	1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66,600,000
	75	1층	3	10,837,208	196,162,792	207,000,000	10,000,000	10,700,000	20,700,000	20,700,000	20,700,000	20,700,000	20,700,000	20,700,000	62,100,000
		2층	6	11,098,976	200,901,024	212,000,000	10,000,000	1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21,200,000	63,600,000
		3층	6	11,256,037	203,743,963	215,000,000	10,000,000	1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64,500,000
		4,5층	12	11,674,866	211,325,134	223,000,000	10,000,000	1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66,900,000
		6~10층	30	11,831,927	214,168,073	226,000,000	10,000,000	1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67,800,000
		11~15층	30	11,988,988	217,011,012	229,000,000	10,000,000	1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68,700,000
		16~20층	26	12,146,049	219,853,951	232,000,000	10,000,000	1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69,600,000
	84	2층	2	12,617,232	228,382,768	241,000,000	10,000,000	1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300,000
		3층	2	12,879,000	233,121,000	246,000,000	10,000,000	1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73,800,000
		4,5층	4	13,088,415	236,911,585	250,000,000	10,000,000	1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75,000,000
		6~10층	10	13,611,952	246,388,048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11~15층	10	13,821,366	250,178,634	264,000,000	10,000,000	1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79,200,000
		16~20층	10	13,926,074	252,073,926	266,000,000	10,000,000	1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79,80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당사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토지비 감정평가 및 가산비용,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 등을 산정하여 책정하였으며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 주택형의 발코니 확장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경우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적용,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단, 그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6.28.) 현재 주택건설지역(고성군)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및 외국인 포함] 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6.28.) 현재"이며, 면적은"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과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 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성군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고성군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고성군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요건**

– 주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별도 계약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어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추가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플러스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일정 별도 통보예정)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기본냉매 공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추가선택품목 금액납부	신한은행	140 – 012 – 466565	영진하우징(주)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소방감리	㈜한길엔지니어링	121,000,000
정보통신감리	㈜한길엔지니어링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등록번호
사업주체	대한토지신탁(주)	110111-1492513
사업위탁자	영진하우징(주)	134511-0373891
시공사	㈜이랜드건설	110111-084168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53번지 ■ www.ganseong-sweetm.com

66㎡ / 69㎡ / 75㎡ / 84㎡ 총267세대

■시행 :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TRUST CO., LTD ■시공 : 이랜드건설 E-LAND CONSTRUCTION ■위탁 : YOUNGJIN 영진하우징(주)

문의전화 1661-3933